

의안번호	제308호
의결연월일	2021. 3. 17.

- 예산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-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1. 2. 24. 이상우, 박응수, 임애민 의원

나. 회 부 일 자 : 2021. 3. 9.

다. 상 정 일 자 : 2021. 3. 17.

제268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행정복지위원회

2. 제안설명 요지 [의원 : 이 상 우]

가. 제안이유

-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성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피해 예방 사업 등(안 제4조~제5조)

- 불법촬영기기 설치 의심 다중이용시설 신고체계 마련
(안 제6조)
-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(안 제7조)
-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한 교육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
(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박 우 현)

-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충청남도과 천안 등 도내 3개 시·군(전국 63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)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·운영하고 있으며,
- 조례의 내용이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및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므로,
-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·답변요지

- 없 음

5. 토 론 요 지

- 없 음

6. 심사 결과

○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